



사업명	대상	품 목	지원한도
1 안전일터 조성지원 (보조금)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50인 미만 위험설비, 방호장치 등 지정33종 및 자율품목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50인 미만 인공지능(AI)감지시스템 등 지정37종 및 자율품목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소규모 특화	10인 미만 끼임(15종), 부딪힘(18종) 재해예방품목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90%)
2.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대·중소 격차 완화	50인 미만 or 소기업 (노후·위험 공정 개선 설비)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원·하청 상생	50인 미만 or 중소기업 원재료 물리·화학적 제조 설비(폐기조건), 화재·폭발 예방설비 등	8,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40%) 2,000만원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10%)
3.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위험설비, 방호조치,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장비 등	15억원 한도 연리 1.5%(고정금리)



고위험개선



스마트 장비



소규모 특화



격차완화



원하청 상생



용자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소개

구분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
소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에 충족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대상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분사 또는 총 공사 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컨설팅 신청



인정심사 신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 (컨설팅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민간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
-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등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인~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한함)
- (컨설팅 비용) 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체계구축 컨설팅 신청

○ 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특수 건강 진단	5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50인미만	(30인미만)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30인~50인미만) 특검 비용의 90%지원
			공동주택 및 청소원	특검 비용의 90%지원
			건설 일용직	☞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50억 미만) 전액지원 (50억~800억미만) 특검비용의 70%지원 (800억미만) 특검 비용의 60%지원
심층 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고위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정밀검사	심층 건강진단 비용의 80%(1·2차 검사항목) ※ 총검사비 195,000원의 80%지원/본인부담 20%(39,000원)	
직종별 건강진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의 80%지원	
작업 환경 측정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규측정)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최대 100만원)
			(기존측정)	-측정 비용의 80%지원(최대 40만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으로 산재보험요율 인하 받으세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공동대표 포함)
- 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일괄사업장)은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적용 가능
-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50인 미만의 각각 사업장을 모두 인정함

2 인정혜택

- 교육 이수시 산재보험 요율 10%인하(1년 간)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동안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사고 예방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대상: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2. 교육시간: 2시간
3. 교육내용: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장에서 안전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계층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합니다.

1. 교육대상: 전 업종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및 중간관리자, 노동자 등
2. 교육시간: 2시간 내외
3. 교육내용: 법사례중심(사업주) 위험성평가 기반 기초교육(노동자)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1. 교육대상: 밀폐공간 보유·작업 예정인 사업장 사업주, 중간관리자 및 노동자
2. 교육시간: 2시간 내외(이론1시간+실습1시간)
3. 교육내용: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재해사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사업주 및 중간관리자가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1. 컨설팅 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중 사업주 교육 이수사업장, 컨설팅 희망 사업장
2. 컨설팅 내용: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운영 현장평가
· 교육일지 작성, 교육 자료 검색 및 활용 방법
3.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 연락처: 042-620-5671

안전리더「사업자리더,지역리더」 참여 안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교육에 소외되거나 안전수칙 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현지어가 능숙한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등을 안전리더(사업장 리더, 지역리더)로 모집합니다.

1. 활동사항
- (사업장 리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TBM, 멘토링 등 안전보건활동
- (지역 리더) 지역 내 외국인교육 보조강사, 간담회 및 캠페인 통역 등 안전보건활동
2. 모집인원: 25명
3. 제출서류: 신청서, 추천서(작성 양식 및 세부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
4. 혜택
- (사업장 리더) K-Point E74 비자 전환 고용부 추천 쿼터에 반영 (비자전환 조건 해당 시)
- (지역 리더) 강사로, 위촉수당 등 활동비용 지급
5. 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홍보센터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 연락처: 042-620-567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안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을 부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1.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종사자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자
- ① 재조업, ②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2. 교육시간: 16시간(인터넷 원격교육(5시간) 및 계획교육(대면교육, 11시간))
3.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 등
4. 교육인정: 당해 연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인정(1회 한함)